

#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사회봉사단 지심회 가입신청서

## ■ 회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앞 6자리	(법인은 사업자 번호)
이메일		연락처	
주소			

## ■ 후원 방식

<b>후원 방식 및 후원금 (O표 해주세요)</b>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자비회원 ( )	월 후원금 ( ) 만원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CMS 정기후원 해주시는 회원입니다.
	봉사회원 ( )	일시 후원 또는 비정기 후원 해주시는 회원입니다. 후원 계좌번호 농협 301-0202-8918-11사회봉사단 지심회
	준회원 ( )	모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회원의 자격은 없습니다.(미성년자 등)
	단체회원 ( )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회원입니다.

## ■ 후원금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	지정출금일 매월 ( )일

###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 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정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출금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페이먼츠㈜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
2.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앞6자리,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관계 법령에 의거)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위탁

1. 결제(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관련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나이스페이먼츠(주)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을 서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위탁 업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업체 명을 인터넷홈페이지, SMS,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겠습니다.

### 문자(SMS)발송 동의

1.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에 동의합니다. 상기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하여 CMS 출금이체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및 문자(SMS)발송에 동의하며, 자동출금이체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CMS 신청자(이름) \_\_\_\_\_서명

본인은 사회봉사단 지심회의 정관을 열람, 숙지하고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였으며, 회원의 전(全)의무를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위와 같이 사회봉사단 지심회의 회원으로 가입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심회원 신청자(이름) \_\_\_\_\_서명

# 사회봉사단 지심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회봉사단 지심회”라고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1. 본회는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건 강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인과법에 기초한 절대적 평등, 인연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자원봉 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사업에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목적도 개입하지 않는 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오태지동길 185-15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자원봉사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 다.

1. 봉사자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결성 및 운영
2. 교도소 내 수감자들을 위한 자매결연과 인성교육
3. 자살예방 상담과 우울증치료 상담 봉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과 생필품 및 식품 지원
5. 군장병 위문활동
6. 지역사회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의료봉사활동
7.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8.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및 지원활동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9조 1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를 회원으 로 칭한다.

**제6조 (종류)** 회원은 자비회원, 봉사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자비회원 : 본회에 가입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소정의 정기후원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2. 봉사회원 : 본회에 가입하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정기후원하지 않는 자로 한다.
3. 준회원 : 본회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은 하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자로 한다.
4. 단체회원 :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여 정기 후원하는 단체로 한다.

**제7조 (권리)** 자비회원과 봉사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4. 소정의 정기후원금을 납부할 의무(자비회원에 한함.)

**제9조 (가입, 탈퇴 및 징계)**

1. 가입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2. 탈퇴 : 본인의 탈퇴의사를 운영위원회에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다.
3.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 서는 경고,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조직

**제10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각 조직을 구성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표
3. 운영위원회
4. 지역위원회
5. 자문위원회
6. 감사
7. 총무처
8. 사무처
9. 지부

**제11조 (임기)** 대표, 감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지역위원, 총무처장, 사무처장 및 각 위원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격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총 회원 재적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감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지역위원, 총무처장, 사무처장 및 각 위원장의 선출 및 위촉

- (3) 사업계획 및 계획(안)의 승인
- (4) 예산, 결산(안)의 승인
- (5)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대표)**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는 사단법인 보리수 이사회에서 결정된 1명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조직 운영 및 사업과 활동 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 자문위원장, 지역위원장, 총무처장, 사무처장등 당연직 운영위원과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장은 사단법인 보리수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3.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집)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 소집 일정 등은 운영위원장이 결정 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또, 운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체 없이 소 집한다.

**제15조 (지역위원회)**

1.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부를 설치하고 산하지역을 관리한다.
2. 지역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3. 지역위원회는 본 회의 사업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6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중요활동에 관해 자문한다.
2. 자문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산 상태를 감사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 (총무처)**

1. 본회의 사업예산관리와 재무회계 및 결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무처를 설치하며 총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총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무는 총무처장이 한다.
3. 총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둔다.

**제19조 (사무처)**

1. 본 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처 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사무처장이 한다.
3.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둔다.

**제20조 (지부)**

1. 본회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 설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장 재정

**제21조 (수입)**

1. 본회의 수입은 운영지원금, 후원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2. 후원금의 관리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본회는 매달 사단법인 보리수 이사회로부터 결정된 운영금을 지원받는다.
4. 본회의 운영지원금 잔액은 이월가능하다.
5. 본회의 사업을 위한 제반비용은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 보리수의 지원을 받는다.
6. 운영지원금을 제외한 본회의 모든 수입은 사단법인 보리수 보통재산으로 귀속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은 운영위원회와 대표의 의결을 거쳐 매월 사단법인 보리수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5장 해산

**제2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며 사단법인 보리수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사단법인 보리수에 귀속한다.

## 제6장 부칙

**제26조 (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 의에 따른다.

**제27조 (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과반수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